



2024

안전·환경

교육과정/사업안내



환경안전교육원

Greeting

환경안전교육원은

Korea Environmental and Safety Institute

환경안전교육, 산업안전교육, 환경·안전분야 진단 등의 사업을 주목적으로
환경부에서 허가한 비영리법인입니다.

환경·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기관은
고객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힘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교육원 임직원 일동

Contents

I 교육안내

산업안전보건법 04

- 직무교육
 - 0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신규/보수)
 - 02.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신규/보수)
 - 03.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직무교육(신규/보수)
 - 0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보수)

- 안전교육
 - 05.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제조업·서비스업)
 - 06. 위험성평가 교육(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중대재해처벌법 10

- 01. 경영책임자, 최고안전책임자교육
- 02. 안전보건책임자, 관리자교육

화학물질관리법 12

- 0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정기검사교육
- 02.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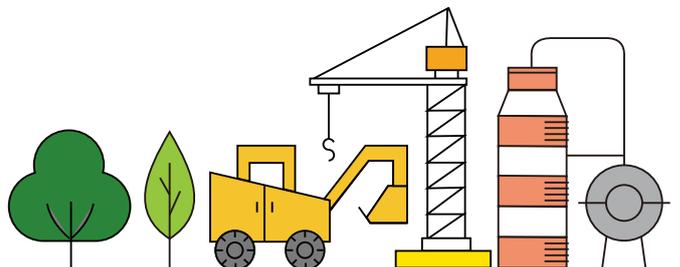
II 사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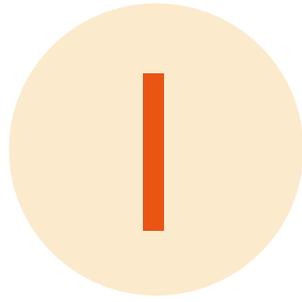
환경안전분야 15

- 0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02.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 0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 04. 유해화학물질 환경청 인허가

산업안전분야 20

- 01. 안전관리위탁전문기관
- 0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0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04.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 05. 공정안전보고서
- 0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07. 위험성평가
- 08. 자율안전확인신고
- 09. 방폭안전진단
- 10.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교육안내



산업안전보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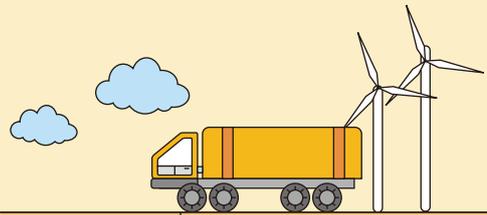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지위에
선임된 사람이 업무수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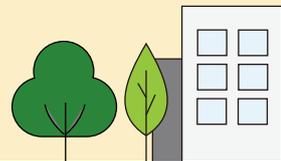


대상자	업종	이수시간	관련법령
안전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신규/보수)	건설업, 제조업 및 기타업	6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신규/보수)	건설업, 제조업 및 기타업	34/24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직무교육 (신규/보수)	-	34/24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 (보수)	건설업, 제조업 및 기타업	8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 교육신청 : <http://www.dutycenter.net/>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교육은 요청시 사업장별 출장교육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업종	이수시간	관련법령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제조업 및 기타업	1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험성평가 교육	제조업·건설업· 서비스업	16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제3항

- 교육신청 : <http://www.koesti.or.kr>

0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신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안전·보건 경영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 **교육시간** - 6시간/1일(09:00~16:00)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최초 선임된 자(3개월 이내)
- **교육내용**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 Q & A

Q.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A.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입니다.

Q.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선임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하며, 선임 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보수)

신규교육을 받고 2년이 지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보수 교육으로 리더십과 안전경영방법을 교육하여 사업장 내 효과적인 안전 경영을 가능토록 하는 과정

- **교육시간** - 6시간/1일(09:00~16:00)
- **교육대상**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2년이 지난 안전보건관리책임자(6개월 이내)
- **교육내용**
 1. 산업 안전·보건 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율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신청 방법

-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www.dutycenter.net) 회원가입 후 → 재단법인 환경안전교육원 검색 교육신청

02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신규)

안전관리자가 사업장 내 전반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습득하여
직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자율적인 업무를 가능토록 하는 과정

- **교육시간** - 34시간/5일
- **교육대상** - 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된 자(3개월 이내)
- **교육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개론에 관한 사항
 2. 인간공학 및 산업 심리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 교육 방법 및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4. 안전 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 기법에 관한 사항
 5. 안전 기준 및 개인 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 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 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8.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보수)

안전관리자가 사업장 내 전반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습득하여
직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자율적인 업무를 가능토록 하는 과정

- **교육시간** - 24시간/3일
- **교육대상**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2년이 지난 안전관리자(6개월 이내)
- **교육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장 안전 개선 기법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신청 방법

-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www.dutycenter.net) 회원가입 후 →
재단법인 환경안전교육원 검색 교육신청

03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직무교육 (신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기술지도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신의 안전보건관련 전문지식 및 사례 습득을 통하여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과정

- **교육시간** - 34시간/5일
- **교육대상**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리 위탁업무 신규 종사자(3개월 이내)
- **교육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개론에 관한 사항
 2.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방법 및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 기법에 관한 사항
 5.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 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8. 무재해운동 추진 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직무교육 (보수)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기술지도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신의 안전보건관련 전문지식 및 사례 습득을 통하여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과정

- **교육시간** - 24시간/3일
- **교육대상**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2년이 지난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6개월 이내)
- **교육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장 안전 개선 기법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직무교육 신청 방법

-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www.dutycenter.net) 회원가입 후 →
재단법인 환경안전교육원 검색 교육신청

0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 (보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대한 직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업무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사업장 내 자율안전관리 업무를 가능토록 하는 과정

- **교육시간** - 8시간/1일(09:00~18:00)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2년이 지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개월 이내)
- **교육내용**
 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Q & A

Q.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 A.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
- 대상 업종 : 제조업/임업/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환경정화 및 복원업

Q.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

- A.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

Q.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 A.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건강진단,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Q. 상시근로자수 선정

- A.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수를 산정해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신청 방법

-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www.dutycenter.net) 회원가입 후 → 재단법인 환경안전교육원 검색 교육신청

05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제조업 및 기타업)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갖춰야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습득함과 동시에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

- **교육시간** - 16시간/2일
- **교육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상의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사람
-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교육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2.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6. 표준 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7.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및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06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개요, 단계별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 사례 및 실습 등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실무역량 배양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을 습득하는 과정

- **교육시간** - 16시간/2일(제조·건설·서비스업)
- **교육대상** - 위험성평가 업무담당자
- **교육내용**
 1. 위험성평가 개요·실시 규정·기법·사례
 2.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3. 업종별 위험성평가 및 실습

※ Q & A

Q.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 시 관리감독자교육 이수 여부

- A. 관리감독자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관한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경우 이수시간만큼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은 16시간(이론 8시간, 실습 8시간),

Q.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여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22.08.31, 기재부) 제15조 위험성평가]

- A. 실시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체 공공기관

※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및 위험성평가 교육 신청 방법

- 환경안전교육원 홈페이지(www.koesti.or.kr)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란?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대상자	이수시간	교육방법
경영책임자, 최고안전책임자	4	집체
안전보건책임자, 관리자	16	

05 경영책임자, 최고안전책임자 교육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습득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인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과정

- **교육시간** - 4시간/1일
- **교육대상**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자
-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 **교육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2.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3.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분야별 적용

06 안전보건책임자, 관리자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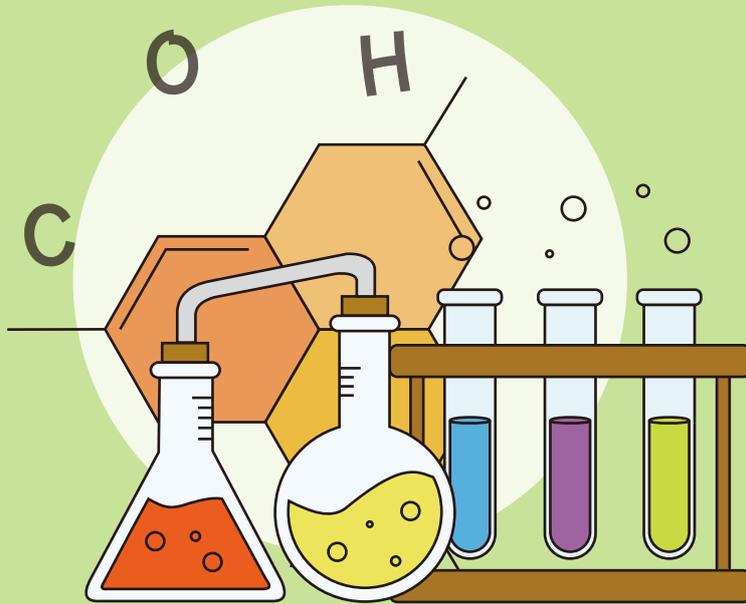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운영을 돕는 실무 교육과정

- **교육시간** - 16시간/2일
- **교육대상**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담당자, 전담조직 내 담당자
- **교육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2.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4.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분야별 적용
 5. 주요 의무사항 이행

※ 경영책임자, 최고안전책임자 교육 및 안전보건책임자, 관리자 교육 신청 방법
- 환경안전교육원 홈페이지(www.koesti.or.kr)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정명	이수시간	교육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정기검사 교육	16	집체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2	

0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검사 교육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 시 검사기관에서 시행하는 설치, 정기검사에 대한 사업장 관리자의 전문성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과정

- **교육시간** - 16시간/2일
- **교육대상**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 **교육내용**
 1. 취급 시설의 개요 및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3. 사전 서면 검사자료 사례 및 작성방법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우수사례
 5. 화학사고 사례 및 발생 시 조치 요령

02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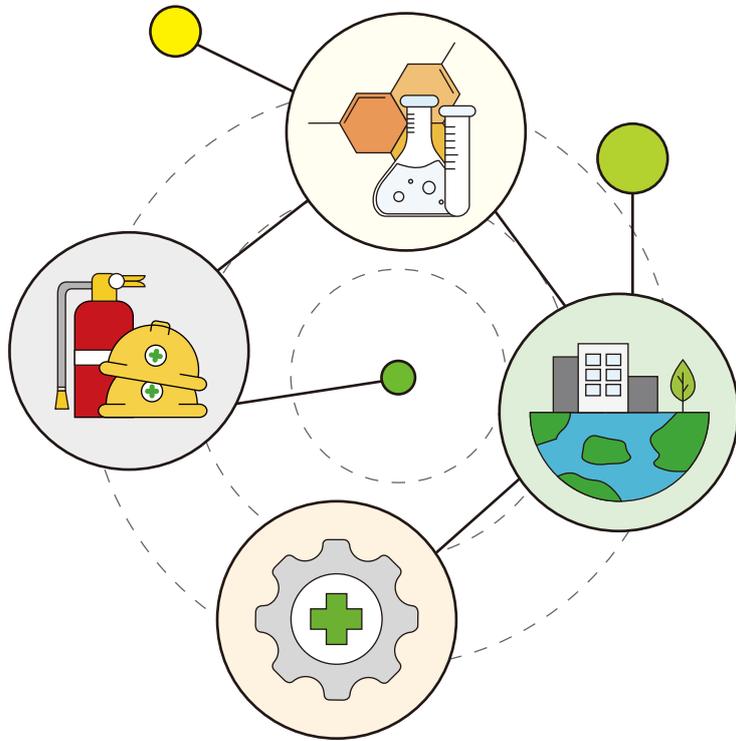
교육·훈련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위험성 제고 및 누출 등의 사고 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숙지를 위한 과정

- **교육시간** - 2시간/1일
- **교육대상**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 **교육내용**
 1.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
 2. 유해화학물질 취급방법
 3. 화학사고 대비·대응 및 누출 시 응급조치
 4.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방법
 5.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이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정기검사 교육 및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신청 방법
- 환경안전교육원 홈페이지(www.koesti.or.kr)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사업안내



환경안전분야

산업안전분야

환경안전분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취급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이유로 총괄 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에서 검사 및 안전 진단을 받도록 하는 제도

유해화학물질 환경청 인허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지방환경관서에 영업허가를 받는 제도

0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관서)

제출대상 사업장

- 1군 사업장 :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 사업장 :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설비 대상

구분	분류	시기·주기	
		규정수량	소량기준
개요도		<p>사업장 기준</p> <p>1군 상위규정수량 (UT)</p> <p>2군 하위규정수량 (LT)</p> <p>면제</p> <p>계획서 작성 내용</p> <p>1군 [기본정보] [장외평가정보] [내·외부 비상대응계획] [지역사회고지]</p> <p>2군 [기본정보] [장외평가정보] [내부 비상대응계획]</p>	<p>단위 설비 기준</p> <p>시나리오 대상</p> <p>시나리오 소량기준</p> <p>시나리오 제외</p>
	신청 기준	단위	제출 대상 및 작성 수준 판단
	방법	각 물질별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	단위 설비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

제출시기

신규제출

- 제출시기 :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장으로 최대보유량산정에 따라 1군 또는 2군에 해당하는 사업장(규칙 별표4 비교 제2호)

변경제출

- 제출시기 :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제출
- 아래의 변경으로 인해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 A.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 B.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C.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D.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 E.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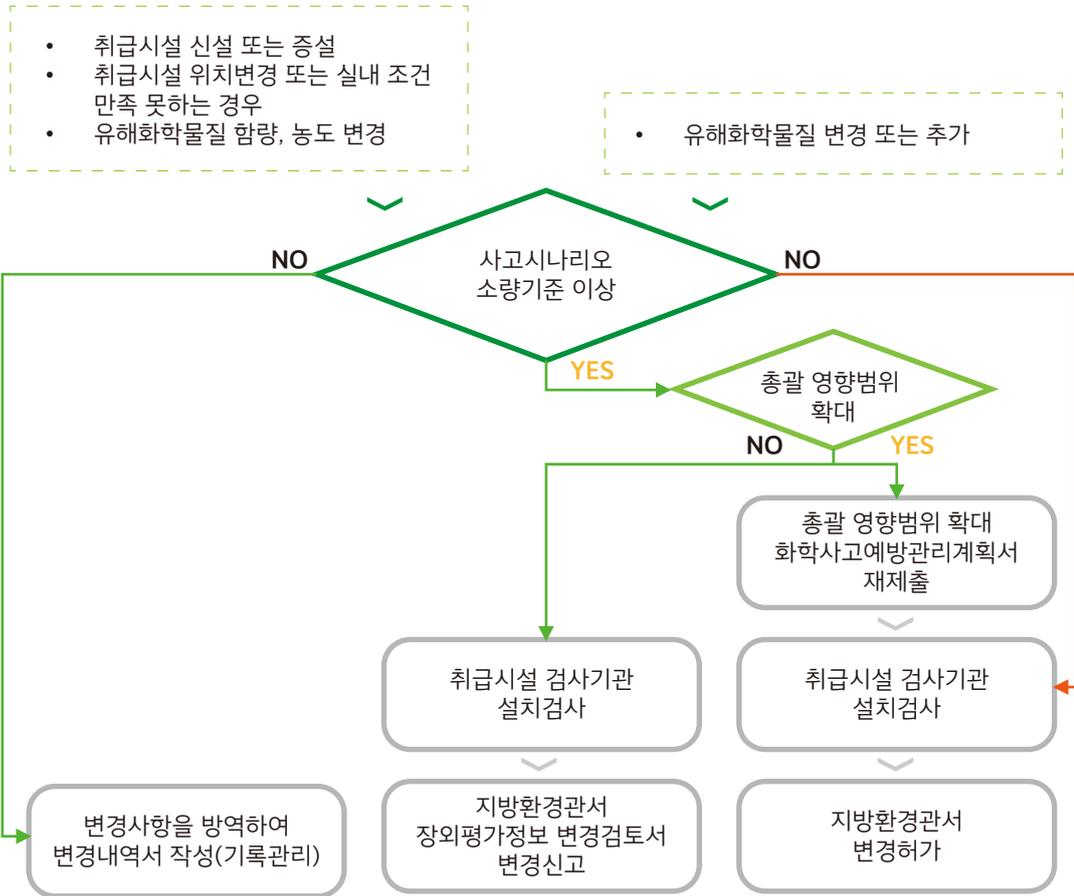
※ 총괄영향범위 :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 범위의 외각을 연결한 구역

재제출

- 1·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서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통보 후 5년 재제출시점이 도래하여 예방 계획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법 부칙 제3조)
-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5년 동안 변경제출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작성 규정 제11조)
 - ▶ 최초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제출
 -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변경 제출한 경우(작성 규정 제11조)
 - ▶ 변경 제출 후 적합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02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제출 판단



※ 별지 제2호 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제9조 및 제19조 관련)]

성상	유해성 분류	규정 수량
고체	유해성 구분 없음	2,000kg
액체	유해성 구분 없음	400kg
기체	독성구분*1	5kg
	독성구분 2	5kg
	독성구분 3	200kg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른 건강유해성 급성 독성구분
- 급성독성이 없거나 급성 독성이 구분4인 경우는 100kg 적용

0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검사 및 안전진단의 시기/주기

구분		시기·주기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 검사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마다(최초 정기검사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최초 정기검사 전후 30일 이내)	
수시 검사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학사고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장이 통지 시	
안전 진단	설치·정기검사 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결과 없는 경우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4년
		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4년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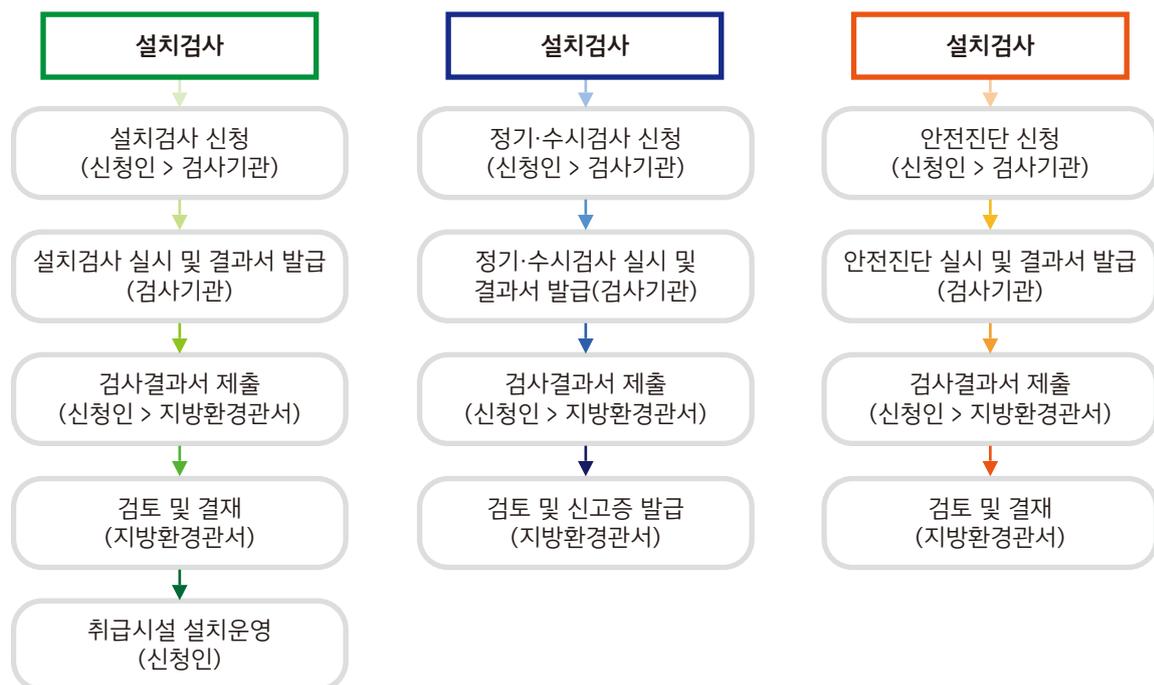
검사 기관

기관명	관할구역
한국환경공단	전국 (http://www.safechem.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국 (http://www.kosha.or.kr/cheminsp/)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국 (http://cyber.kgs.or.kr/)

검사 방법

- 검사 신청 시 사전서면검사 자료 제출 후 현장 확인 검사 실시

검사 및 안전진단 절차



04 유해화학물질 환경청인허가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 선박, 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 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에 따른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 위치	물질 구분	연간 사용량
상수원 보호구역 밖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제외)	연간 120톤 이상
특별 대책지역 내		연간 60톤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제외), 전용공업지역 내		연간 240톤 이상
상수원 보호구역 내, 특별 대책 지역 밖	제한물질	연간 60톤 이상
상수원 보호구역 내, 특별 대책 지역 밖	유독물질 겸 사고대비물질	연간 100kg 이상
상수원 보호구역 내, 특별 대책 지역 밖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	소량취급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미작성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무 흐름도



산업안전분야

안전관리위탁전문기관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전문가를 통해 산업 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를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중대재해의 수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이 스스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 해법을 마련 및 실천하기 위한 제도

공정안전보고서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행하여 중대산업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자율안전확인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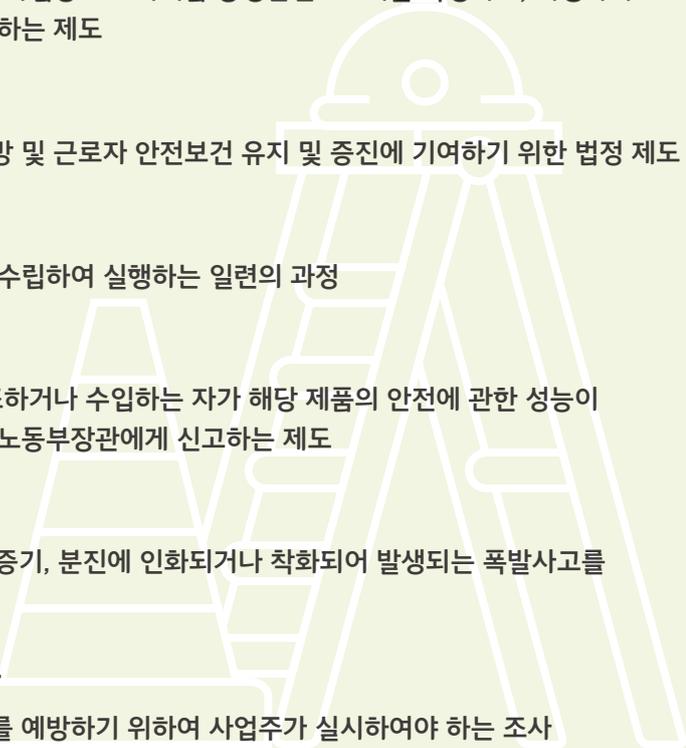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방폭안전진단

전기설비가 원인이 되어 가연성 가스, 증기, 분진에 인화되거나 착화되어 발생하는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진단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



01 안전관리위탁전문기관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제5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안전관리 위탁 수행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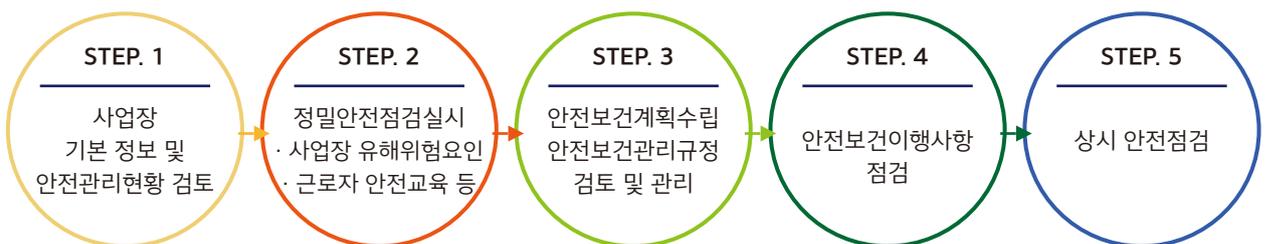
- ▶ 사업장 안전점검
 - 월 2회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 사업장 안전조치 기술지원
- ▶ 사업장 안전교육
 - 관리감독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작업별 특별안전교육
 -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각종 안전관련 자료 제공
- ▶ 산업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 ▶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안전관련 업무 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보 제공
 -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에 대한 지도 관리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안전관련 업무 지원

위반사항 법적 제재 사항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안전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법 제175조 제5항제2호

산업안전관리 업무 위탁 수행절차



02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KOSHA MS)

● 안전보건경영이란?

-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 조건과 국제표준(ISO 45001) 기준체계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권고를 반영한 안전보건경영체제로,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는 사업

● 인증심사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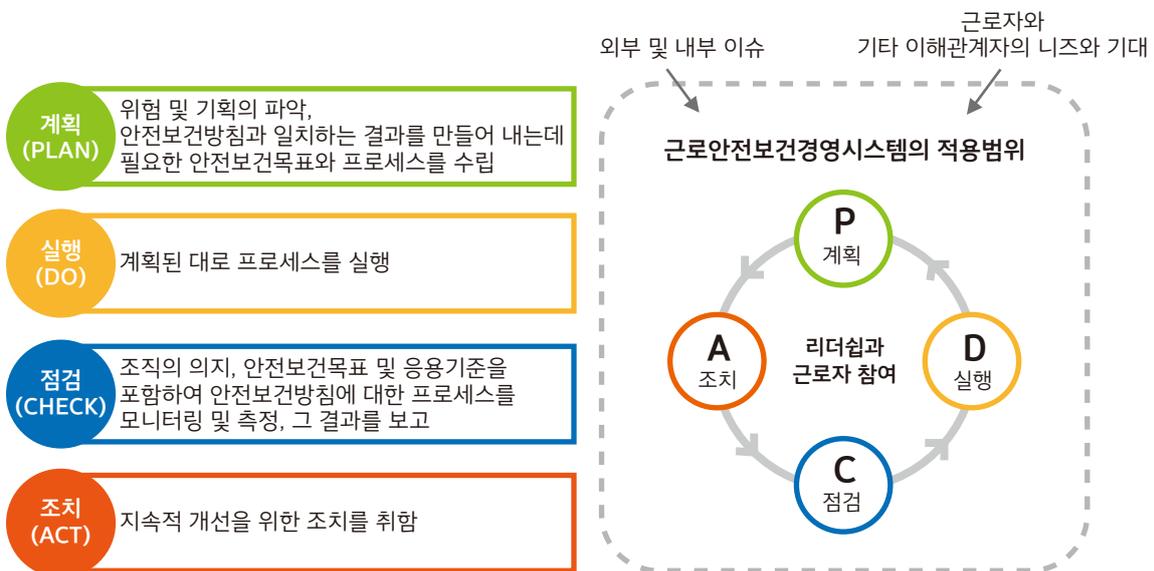
- 안전보건경영체제분야(27개 항목)
- 안전보건활동수준분야(14개 항목)
- 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 분야(6개 항목) 등 47개 항목의 판단기준에 의해 심사를 실시

인증취득효과

- 국제적 통용 수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
-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자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여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추진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실현
- 과학적 위험성 평가 기법 도입으로 체계적인 위험관리체계 구축
- 재해와 작업 손실의 감소로 재해보상액 감소, 생산성 및 품질향상, 근로자 복지 개선에 기여
- 내·외부 고객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손실감소효과의 극대화 및 급변하는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주요 과업 내용

- ▶ 컨설팅 과제 지원분야별 세부내용에 따라 참여 협력업체의 근원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컨설팅 중점 실시



- 계획(PLAN) : 사업장에서의 위험 및 기회를 파악하고 안전보건방침과 일치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안전보건목표와 프로세스를 수립한다.
- 실행(DO) : 계획에 따라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 점검(CHECK) : 기업 조직의 의지, 안전보건목표와 응용 기준을 포함하여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및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 조치(ACT) :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0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란?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있어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용하며, 체계구축 7가지 핵심요소 중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를 강조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중점 지원사항

- 사고 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등 사업장의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근로자와 함께 찾아가는 컨설팅 중점 실시
- 작업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등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수행

▶ 신청

- 근로자 수 5인(제조업 10인)이상 ~ 50인 이하인 사업장 중 업종(건설업 제외) 관계없이 공단에 컨설팅 신청

▶ 컨설팅 수행

- 사업장 별 5회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요소별 실행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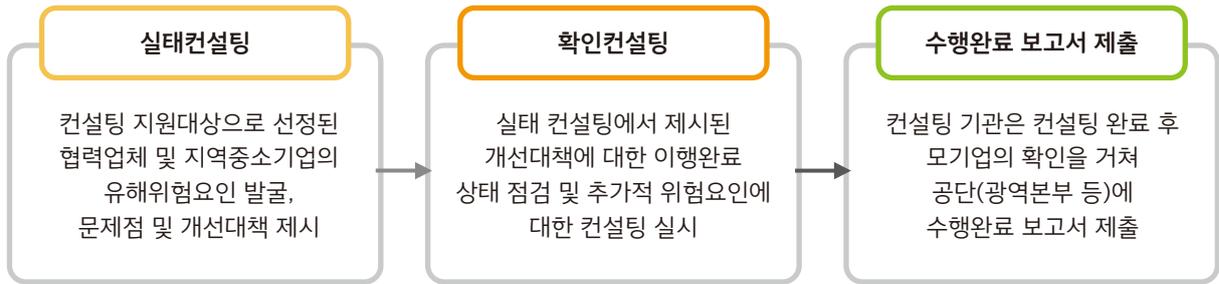
핵심요소	실행전략	컨설팅 수행목표
경영자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의지·목표 설정 - 안전보건 자원(인력·시설·장비) 배정 - 구성원 권한 설정, 책임 설정, 참여 독려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
근로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 관한 정보 공개 -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 조성 	
위험요인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정리 - 산업 재해 및 아차사고 조사 - 위험 기계, 기구, 설비 등 파악 - 유해인자·위험장소·위험작업 파악 	유해·위험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지원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요인별 위험성 평가 - 위험요인별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 검토 -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이행 - 교육 훈련 실시 	
비상조치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작성 -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 수립 -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 훈련 	「중대재해처벌법」 7대 핵심요소 의무 이행 역량 지원
도급·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인 선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평가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목표를 설정 평가 -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확인, 발굴된 문제점 주기적 검토 및 개선 	

04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사업목적

-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가 안전·보건에 관한 우수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컨설팅 수행 절차



컨설팅 실시기준

- 컨설팅 기준 : 실태 컨설팅[2명 : 3일 ~ 5일], 확인 컨설팅[2명 : 2일 ~ 3일]
- 컨설턴트 기준 : 「컨설턴트 등급 기준표」의 기준 적용(컨설턴트 2인 중 ‘고급기술자’ 등급 이상의 1인 참여)
- 교육 기준 : 실태컨설팅에 참여한 컨설턴트를 교육 강사로 필수 지정

주요 과업 내용

▶ 컨설팅 과제 지원분야별 세부내용에 따라 참여 협력업체의 근원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컨설팅 중점 실시

컨설팅 과제	세부 내용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Part 1) 위험성평가 기법 전수 및 실행력 향상
	(Part 2)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체계구축 지원
3대 사고 유형·8대 위험 요인	협력업체 중대재해 취약 분야 중점으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대책 지원
폭발장소 위험성평가	사업장의 폭발 위험 장소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개선대책 제시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화학물질에 의한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 수립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조사 및 대책수립
밀폐공간작업 위험예방	사업장 내 밀폐공간 조사, 유해가스 측정 등
공통 교육 내용 (컨설팅 시 필수 병행실시)	CEO 인식개선,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근로자 위험인지 향상, 안전·보건관리자와 관리감독자 간 소통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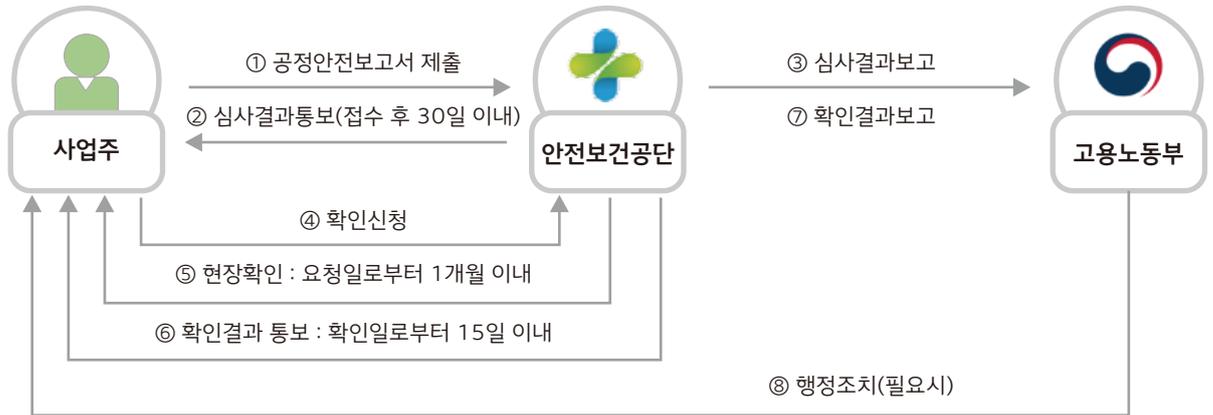
- ▶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등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제시
- ▶ 매칭 컨설팅 과제 중 선택한 지원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컨설팅 실시로 재해예방에 기여

05 공정안전보고서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심사 및 확인 절차



제출대상·시기·서류·방법

- 제출주체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제출시기 : 착고일 30일 전
- 제출서류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21호 별지 1호 서식, 공정안전보고서 2부)
- 제출방법 : 사업장 소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수수료 입금
→ 공정안전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 →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신청 → 전문기술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확인

※ 관련 법령, 신청서 및 제출 서식, 작성 예시집 등 제공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업종	업종분류 코드	업종	업종분류 코드
원유정제처리업	19210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기타 석유정제출 재처리업	19229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 (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31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농약 원제제로만 해당)	2032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20494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관련 별표 13,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물질을 하루동안 최대로 규정 수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 설비

0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

-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10***	식료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262***	전자부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3***	기타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대상설비(5종)

-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반응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고온(350℃) 또는 고압(980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가열로 또는 가열기)
- 건조설비 :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소소비량이 50kg/hr 또는 최소소비전력이 50kw/hr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가스집합용접장치 :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배풍량이 60m³/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배풍량이 150m³/분 이상)
 - ※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참조
 -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참조
 - ※ 분진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참조

제출자 및 제출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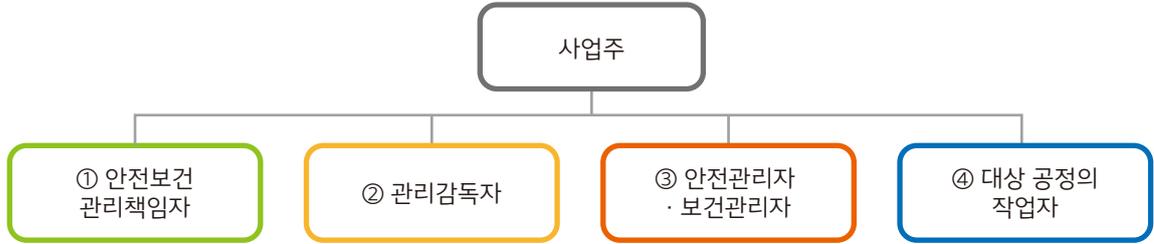
- 제출 주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제출 시기 :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 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한다.

07 위험성평가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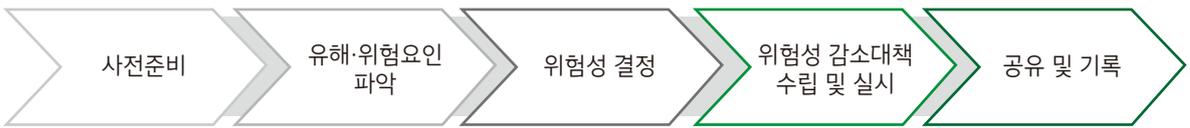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 ~ ④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

위험성평가 절차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절차



- 실시 규정 작성
- 위험성 수준 및 판단기준 등 확정
-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및 활용

- 순회 점검에 의한 파악 포함
- 아차사고 등 활용

- 위험성 수준의 판단
- 허용 가능 여부 결정

-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실행
- 가능한 낮은 위험성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실행
- 허용 가능 여부 재확인

- 결과의 게시 주지
- TBM을 활용한 공유

- 실시 결과를 기록
- 3년간 보존

08 자율안전확인신고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인 신고) ~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자율안전확인신고란?

-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신고제출서류

- 자율안전확인신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 서식])
- 제품의 설명서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 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서(시험·검사 결과서의 경우 신고자가 관련 시험·검사 설비를 보유한 경우 자체 시험·검사 결과서로 대신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09 방폭안전진단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출대상

- 전기설비의 방폭(폭발방지)이란 전기 설비가 원인이 되어 가연성 가스나 증기 또는 분진에 인화되거나 착화되어 발생하는 폭발사고를 방지하는 것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대상

- 기 설치된 방폭 설비 진단
- 신설하고자하는 방폭 설비에 대한 진단 및 시공 감리
-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방폭 진단의 내용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 C IEC 60079-10-1에 따른 폭발위험지역 구분
- 방폭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0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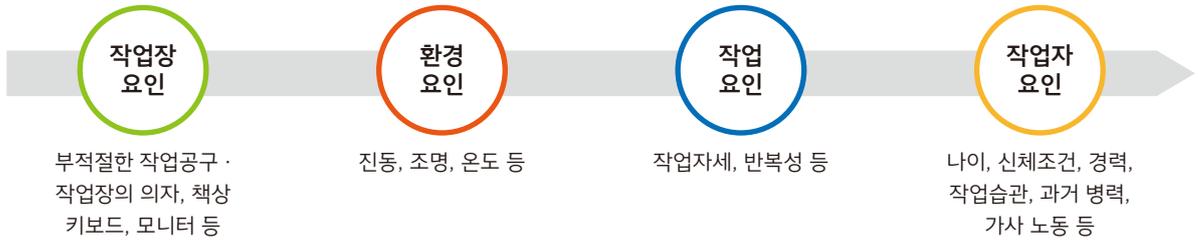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근골격계질환이란?

-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신체에 나타나는 건강장해를 총칭

근골격계질환 발생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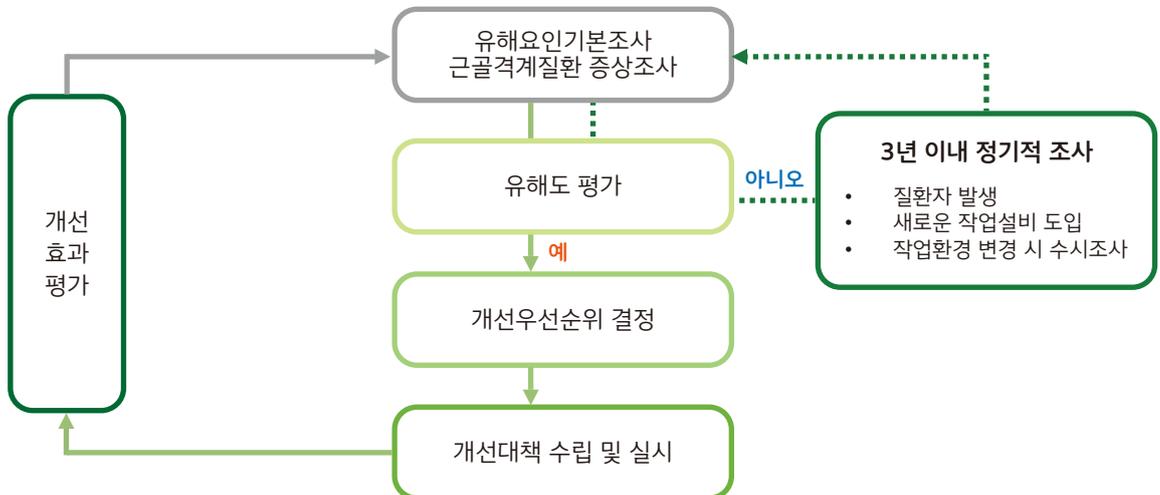
유해요인조사 시기

- 정기 유해요인 조사 :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
- 수시 유해요인 조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내용

- 유해요인 기본조사
- 근골격계질환 증상 설문조사
- 정밀평가(작업분석·평가도구)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 및 절차



2024년도 환경안전교육원 연간교육일정

구분	교육과정	교육 정원	교육 일수	교육 시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산업안전 보건법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건설업]	70	1	6	18, 26	7*, 29	29*	25	20	20	12	20	4, 30	7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 [건설업]	70	1	6	19	1, 6*	4, 28*		21		11		5	8	1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제조업 및 기타업]	70	1	6		2	5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제조업 및 기타업]	70	1	6			6						3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건설업]	70	5	34			11~15			10~14		26~30		21~25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건설업]	70	3	24		26~28	18~20			17~19		21~23		28~30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제조업 및 기타업]	70	5	34				15~19				15~19			18~22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제조업 및 기타업]	70	3	24				22~24							13~15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교육	70	5	34		19~23								14~18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보수교육	70	3	24		14~16									4~6, 25~27	2~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	70	1	8				21			21		19		12	12		
산업안전 보건법 안전교육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제조업]	70	2	16	수시												
	위험성평가 교육 [제조업]	40	2	16			7~8	3~4	22~23		23~24			10~11			10~11
	위험성평가 교육 [건설업]	40	2	16							1~2						
	위험성평가 교육 [서비스업]	40	2	16			26~27				3~4						
중대재해 처벌법	경영책임자, 최고안전책임자 교육	40	1	4				9			26						
	안전보건책임자, 관리자 교육	40	2	16						4~5					28~29		
화학물질 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정기검사교육	40	2	16						27~28				10/31~11/1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40	1	2	수시												

* : 경기도 안전 교육

※ 상기 교육일정은 교육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교육은 요청시 사업장별 출장교육이 가능합니다.



- Add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 1로 76, 6동 204호
- Tel 1800-8133
- Fax 070-7611-6133
- E-mail aestiz99@gmail.com
- Web www.koesti.or.kr